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14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)	<u><삭 제></u>
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	
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	
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	
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	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
를 둘 수 있다.	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
<u>한다.</u>	